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7/ 23 통권 1737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사례로 보는 국세청의 세금 절약 Guide -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 I. 매출 관련 (소탐대실 : 小貪大失)
    - 1. 매출누락추징위험 2. 수출시 영세율서류 3. 사업포괄양수도 4. 음식점의 종업원 봉사료
  - II. 매입 관련
    - 1. 세금계산서 발급 2. 매입세액불공제 3. 첫거래시 상대방 사업자 확인 4. 세금계산서 주고받기
    - 5. 세금계산서 제때 받기 6.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가능 7.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8.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9. 대손금의 세액공제 10.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 11. 일반과세자 전환시 재고매입세액공제 12. 수출시 면세포기매입세액공제
  - III. 소득 관련(금융·사업·기타·공통)
    - 1. 금융소득과세여부 2. 장부기장시 세금절감 3. 간편장부 기장 기능자 4. 기장과 증빙
    - 5. 적격증빙서류비치 6. 복식부기 기장유리 7. 사업초기 결손금 공제가능 8. 주택임대과세대상
    - 9. 소액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선택 10. 법정필요경비 11. 중간예납추계신고 12. 세금분납가능
  - IV.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쉬운 신고
  - V. 원천 관련
    - 1. 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2. 인적용역사업소득의 원천징수 3. 봉사료의 원천징수여부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책자 中, 2025. 7

## 1. 매출 관련

### 1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 ● 사업자 관리

요즈음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 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관련 고발 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다.

#### ● 매출누락자에 대한 조치

##### ○ 세무조사 실시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 ○ 탈루세액 과세

현금매출액 등을 신고 누락한 것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될 경우, 당초 납부 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상여 포함)에 가산세\*(과소신고, 납부지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등)가 추가로 부과된다. 따라서 원래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에 추가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 통상적으로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납부지연가산세(환급지연가산세) :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 0.022% × 경과일수



○ 조세범으로 처벌

조사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성실신고의 중요성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 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과세자료 수집 및 제출에 관한 법률」의 시행,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 구입,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 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 하였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2

##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경우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수출 촉진 및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매출세액이 '0'이 되게 만든 제도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다. 신고기간에 임박해서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영세율 제도

영세율 제도는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매출세액 산출 시 영(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해주는 완전면세제도를 말한다. 이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 및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영세율 적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세율과세표준의 신고와 더불어 수출사실 등을 입증할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

유형	법 규정 첨부서류
직수출 대행수출	- 수출실적 명세서 - 소포수령증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외국인도수출 외국판매수출	- 수출계약서 사본 -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 (로컬수출)	- 내국신용장 사본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영세율을 입증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세율이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2항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부가-992, 2013.10.24.)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5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국세청 고시 제2024-1호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 3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재산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 원 (건물가액 10억 원 + 부가가치세 1억 원 + 토지가액 3억 원 - 보증금 8억 원)에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던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부가가치세 1억 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 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러니 잔금일까지 6억 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 원은 나중에 환급 받게 된다고들 한다.

김재산 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다.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있을까?

● 사업의 양도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수자가 사업을 인수할 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 ① 미수금에 관한 것
- ② 미지급금에 관한 것
- ③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사례

- ①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③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 ②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 ③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 ④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 사례의 경우 김재산 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고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상에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함이 확인된다면,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1억 원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부담을 덜게 된다. 이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서 사업양도신고서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4 유흥음식업의 경우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를 잘못 처리하면 사업자가 세금을 대신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봉사료

유흥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종업원이 봉사료(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지급하면 사업자는 음식값만 매출로 신고하면 된다.

그런데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 세무상 처리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즉,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의 요건】**

- ①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②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④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받는 사람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를 받는 사람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 봉사료 원천징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음식값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 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음식값의 20%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봉사료 전체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득세 5%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봉사료는 술값이나 음식값과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영수증 등을 발급하여야 하며 귀찮다고 전체금액을 함께 처리한다면 봉사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을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국세청고시 제2021-38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II. 매입 관련

### 1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자

일반과세자(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 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정확히 발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므로, 공급 시기가 도래 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 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 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다만,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 세를 물게 된다.

예를 들어 5월 25일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6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위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음 해 1월 3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 해 7월 27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해 공급자는 1%, 공급받는 자는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 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②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4조 제3항, 제60조 제2항·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제7호

## 2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된 경우
-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아래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 다만 아래의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다.
  -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 다만 아래의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하는 경우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7월 25일)까지 발급받은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

는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
①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②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 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③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④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 사례
  - 법인 회장이 사용하는 아파트의 냉장고, 홈시어터 등 비품 구입비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 주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법무수수료, 증개 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나, 주식의 발행·취득 관련 비용의 과세사업 확장이나 자금조달을 위한 비용으로 사업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 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 한다.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과 불공제 차량은 다음과 같다.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개별소비세 과세되는 차량)	매입세액 공제 차량 (개별소비세 과세되지 않는 차량)
①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②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③ 125cc 초과 오토바이	①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②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 ③ 길이 3.6미터 이하, 폭 1.6미터 이하인 전기차 ④ 화물자동차, VAN 차량 ⑤ 125cc 이하 오토바이

-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비 업법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함)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차량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에 대한 주유비, 수선비 등의 유지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하다.

-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골프회원권 매입 후 접대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골프회원권을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취득하였다하더라도 동 골프회원권이 접대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 골프연습장 운영하면서 회원들과 골프장 이용한 경우의 매입세액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특정회원들과 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지출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 가치세는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다.
  - 대리점에 무상공급한 재화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 대리점에 무상공급한 재화는 접대 등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 특정거래처에 사전약정 없이 매출할인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여부  
공급금액이 확정되어 판매된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약정 없이 임의 적인 판단에 따라 일정률을 매출할인한 것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
  
-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국민주택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는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이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되어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취지는 토지의 공급에 대해 과세사업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면세되므로 토지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 전 주민번호 기재 세금계산서 등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판단】

- ① 1기(1월 1일 ~ 6월 30일) 중 매입세액은 7월 20일까지 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 ② 2기(7월 1일 ~ 12월 31일) 중 매입세액은 익년 1월 20일까지 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75조, 제77조~제80조

3

### 거래상대방과 첫 거래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여부 확인 하자

왕성실 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다.

그런 그가 며칠 전 사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매입세액 중 1백만 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왕성실 씨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 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땐 어떻게 해야 하나?

● 세금계산서 수취시 유의사항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 줄 테니 사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 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 확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이 정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휴·폐업 여부 확인  
휴업이나 폐업자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4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종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사돌 씨는 2021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는데,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매출액이 대부분 노출되고 있는 데다 일반과세자로 전환까지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세금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사돌 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금절약 방법은 무엇일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text{부가가치세} = \text{매출세액} - \text{매입세액}$$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 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 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방법은 한가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 뿐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 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 받는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일반과세자 이사돌 씨의 2024년 2기 과세기간 (6개월)의 총매입액이 3,3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수취비율	매입세액 공제액
100 %	3,000,000
50 %	1,500,000
0 %	0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5

##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 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하여 2021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22년 2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때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다.

그 후 방문일 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 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1천 5백만 원까지 부과하였다.

방문일 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2024년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2024년 7월에 받는 경우,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 매입자에게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2024년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인 다음 해인 2025년 2월에 발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과소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위 사례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 방문일 씨는 준공검사를 마친 2023년 4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방문일 씨는 과세기간이 다른 2024년 2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이를 공제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천만 원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백만 원까지 부과된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는 제때에 주고 받아야 한다.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32조, 제6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75조, 제108조

## 6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다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최성실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강배짱 씨로부터 330만 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 당하였다.

최성실 씨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 하게 되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하여 최성실 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 ● 입법취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절차

-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 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매입자(신청인)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 (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 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금액 제한 유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 2

**7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 김국세 씨는 사업과 관련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8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신용 씨는, 세련미 넘치는 인테리어와 뛰어난 음식 맛 등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자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였다.  
 세무사는 유신용 씨의 지금까지 신고상황을 살펴본 후,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계산서를 철저히 챙겨 받으라고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제매입세액에 대하여 알려 주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한도액 내에서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라 한다.

● 공제한도액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퍼센트(2025년 12월 31일 까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개인사업자 중 음식 업자의 경우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6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60%, 2억 원 초과인 경우 50% 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인사업자 중 기타업종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55%, 2억 원 초과 45%)

● 공제요건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음식점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공급 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까지 적용

○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어야 함
-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어야 함
-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여야 함
-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함
  -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 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이어야 함
  -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 이어야 함
  -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함

● 공제액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을 적용한다.

( 단, 제조업자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6/106, 그 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 4/104, 개인음식점업자 중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9/109)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 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어민 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유신용 씨가 6개월간 채소류 · 생선 · 육류 등을 3천만 원어치 구입했다고 하면 2,222,222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 9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장보고 씨는, 2022년 12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 5백만 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며,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 원도 함께 신고 · 납부하였다.

그런데 2023년 8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5백만 원은 받지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 대손세액 공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 공제'라 한다.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 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대손세액공제 사유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②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 ③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④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
- ⑥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 ⑦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인 채권

● 대손세액공제 신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구비서류】

- ① 파산 :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명세서
- ②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명세서, 배당표
- ③ 사망, 실종 : 매출세금계산서, 가정법원 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 ④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 매출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 :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
- ⑥ 상법상의 소멸시효 : 매출세금계산서, 인적사항 · 거래품목 · 거래금액 · 거래대금 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 사례에서 장보고 씨의 경우는, 2024년 2월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2024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백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10

### 폐지 · 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의 3/103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는 10/110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물수집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팔봉 씨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고물을 팔 때는 제지회사나 제철소 등에 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지만, 살 때는 소규모 수집상이나 개인들로부터 매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팔봉 씨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정부에서는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매입가액의 3/103(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5/105, 중고자동차는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라 한다.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공제대상 사업자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재활용폐자원의 범위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중고자동차

● 공제신고시 제출서류

- ①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② 매입차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

●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재활용폐자원 : 취득가액 × 3/103

☞ 취득가액 공제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 × 80%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재활용폐자원 공제한도액 계산 사례】**

- 당기 과세표준 : 2억 원 - 세금계산서 수취 폐자원 매입금액 : 5천만 원

-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금액 : 1억 4천만 원

☞ 공제한도액 계산 : 2억 원 × 80% - 5천만 원 = 1억 1천만 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 1억 1천만 원 × 3/103 = 3,203,883원(재활용 폐자원 매입금액은 1억 4천만 원이나 한도 1억 1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한도 초과분 3천만 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중고자동차 : 취득가액 × 10/110

● 재활용폐자원의 부당공제 유형

- 일반규모 미등록자로부터 매입하여 공제받는 경우
- 사망자, 노숙자, 해외이주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부당공제 받는 경우
-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하여 공제 받는 경우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 공제 신고서상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 11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화장품 소매업을 경영하던 정소매 씨는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를 보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한다.

재고매입세액이란 무엇이며, 재고품을 신고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일까?

### ● 재고매입세액 공제

재고매입세액은 재고납부세액의 반대의 경우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신고한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신고 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 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즉, 간이과세자이었을 때 공급대가의 0.5%(2021년 6월 30일 이전 수취분은 매입세액의 부가율)만큼만 공제받았으므로 이를 일반과세자 이었을 경우로 간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추가 공제해 주는 것이다

### ●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

- ① 상품,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 ② 재료, 부재료
- ③ 건설중인 자산
- ④ 감가상각자산(건물·건축물은 10년 이내의 것,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의 것)

### ●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2021년 6월 30일 이전 수취분 재고매입세액 계산 산식】

- ① 재고품 : 재고금액 × 10/110 × (1 - 당해 업종 부가율)
- ② 건설중인 자산 : 해당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당해 업종 부가율)
- ③ 감가상각자산(취득)
  - ㉠ 건물 또는 건축물 : 취득가액(VAT 포함)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0/110 × (1 - 당해 업종 부가율)
  -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VAT 포함) × [1 - 5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0/110 × (1 - 당해 업종 부가율)
- ④ 감가상각자산(자체 제작)
  - ㉠ 건물 또는 건축물 :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 - 당해 업종 부가율)
  -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5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 - 당해 업종 부가율)

【2021년 6월 30일 이전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 · 가스 · 수도 5%, 소매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음식점업 10%
- 제조업 · 농업 · 어업 · 임업 · 숙박업 ·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 부동산임대업 · 기타 서비스업 30%

【2021년 7월 1일 이후 수취분 재고매입세액 계산 산식】

- ① 재고품 : 재고금액 × 10/110 × (1 - 0.5% × 110/10)
- ② 건설중인 자산 : 해당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0.5% × 110/10)
- ③ 감가상각자산(취득)
  - ㉠ 건물 또는 구축물 : 취득가액(VAT 포함)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0/110 × (1 - 0.5% × 110/10)
  -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VAT 포함) × [1 - 5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0/110 × (1 - 0.5% × 110/10)
- ④ 감가상각자산(자체 제작)
  - ㉠ 건물 또는 구축물 :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 - 0.5% × 110/10)
  -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5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 - 0.5% × 110/10)

● 재고매입세액의 신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재고품(상품, 제품, 재료), 건설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4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11조

12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오종자 씨는 10개월 전부터 대만으로 사과를 수출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을 하면서 운송료, 창고사용료, 포장비 등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입세액 1천만 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을 받지 못했다.

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 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반면에,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지 못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만큼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면세포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운송료, 포장비 등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원가에 산입하여 가격경쟁력이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하는 경우와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면세포기의 신고

- 면세포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 ③ 그 밖의 참고사항
- 면세포기의 효력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사업자 등록 신청과 함께 면세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적용된다.
- 면세포기를 하면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므로 일시적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면세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 ●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지 못하며 3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III. 소득 관련

## 1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이용하여 금융소득을 분산하자

나금융 씨는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예금·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초과되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금융소득금액을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되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종전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되므로,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 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한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이유는,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 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 ●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많은 국민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하여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많은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1년간의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4%로 대폭 낮추었기 때문이다.

#### ●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된다. 다만,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 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하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 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2%라고 한다면 10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 원천징수세율

20% → 15% (2001년부터) → 14% (2005년부터)

## ●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 과세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따라서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 ○ 비과세·면제되는 금융소득

## 〈소득세법〉

- 공익신탁의 이익

## 〈조세특례제한법〉

- 65세 이상의 거주자·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의 이자·배당(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예탁금 3천만 원 이하)의 이자(2007년~2025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출자금(1명당 2,000만 원 이하)의 배당(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소액주주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 8백만 원 이하인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이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으로 과세연도별 1,200만 원 이하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과세연도별 1,200만 원 이하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재형저축의 이자·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200만 원 또는 400만원까지의 금액)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가입분으로 이자소득합계액 500만원 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2022년 12월 31일까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이자소득
- 청년도약계좌에 가입(2025년 12월 31일까지)하여 받은 이자·배당소득
- 그 밖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이자·배당소득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14%)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10년 이내 전환·교환·중도상환 조건이 없는 것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해당 규정 폐지(단,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에 대한 이자와 할인율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름)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4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14%)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
  - 2014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이외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200만 원 초과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9%)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
  -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 고위험·고수익 채권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 채권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로 1인당 투자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 (90%)

● 종합과세에 무조건 적용되는 금융소득

국외원천 이자·배당소득과 같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비과세·분리과세)를 이용 하여 연간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 받지 않는다.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6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88조의4

## 2 장부에 매출과 매입 내역을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편의점을 각각 운영하는 김성실 씨와 이남부 씨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유사하다. 다만, 김성실 씨는 매출과 매입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을 갖추었으나 이남부 씨는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두 명의 소득금액과 납부세액이 크게 차이가 났다. 왜 그럴까? (인적공제 등 공제내용은 동일하다.)

●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기장)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 하여 계산(추계)하는 방법이 있다.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 기장의 종류

구 분	대상자	법 조문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외 사업자 ※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임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간편장부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제3항

○ 간편장부 대상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미만인 자(단, 육탕업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예 : 2025년 귀속종합소득세의 기준 수입금액은 2024년 수입금액)

업 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가.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000만 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500만 원

\* 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기준 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

구 분	추계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아래 ①, ②중 적은 금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sup>1)</sup>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금액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sup>2)</sup>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수입금액 <sup>3)</sup> × (1 - 단순경비율)

1)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

2)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귀속연도	2024년 귀속
업종구분	기준수입금액	2023년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000만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인적용역사업자		3,600만 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사업자 제외), 가구 내 고용활동		2,400만 원

[적용례]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24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2025년 5월 (2024년 귀속) 신고 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3,600만 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로서 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기준경비율 대상 수입금액에 미달 하는 사업자와 ②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

다만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및 발급거부자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신규 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된다.

위 사례의 경우 김성실 씨와 이남부 씨의 소득금액과 납부세액이 차이가 발생된 이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성실 씨는 편의점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었기 때문에 기장 에 의한 소득 금액을 계산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남부 씨는 장부가 없기 때문에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방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기장과 증빙서류를 통해 각종 필요경비를 전부 인정받은 김성실 씨가 법정 경비율만 인정받은 이남부 씨보다 소득금액이 적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08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67조의2

### 3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기장하면 소득세 절감과 더불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는 지금까지 장부를 하지 않았으나, 매출과 매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부에 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로서는 기장을 하기 위해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도 없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고민이다.

노장부 씨가 걱정을 하고 있자 이웃 가게의 간편해 씨가 소규모 사업자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가 있으니 그것을 사용해 보라고 알려주었다.

간편장부는 어떤 것이며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된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본인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간편장부대상자 요건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금액 계산할 수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 ①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 ②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인 경우 가능하다
- ※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업 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000만 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500만 원

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간편장부 적용제외 대상자 : 전문직 사업자

- 1) 의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20%) 적용 배제
-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 2008년 이전 발생 결손금은 5년간 공제, 2009~2019년 10년,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은 15년간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 면제

●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사업자가 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20%) 적용
  - ※ 단, 소규모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및 신규사업자는 적용 제외
-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불가
-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Max(무신고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0.07%)
  - ※ 단,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81조의 5,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국세청 고시 제2021- 33호[간편장부 고시]

## 4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명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자

기장을 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정교한 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 사유는 대부분이 증명서류를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출에 따른 증명서류가 없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의 진위여부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나?

### ● 증명서류 필요성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명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증명서류이다.

증명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증명 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명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 그때마다 챙겨야 한다.

증명서류를 제때 챙겨 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증명서류를 만들어 놓는다가나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실제 지출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허위 증명 서류를 만든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될 수도 있다.

따라서 증명서류는 비용이 발생될 때마다 잘 챙겨놓고 보관도 잘 해야 한다.

### ● 증명서류 보관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증명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증명서류 종류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정규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지 아니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수취 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하므로 반드시 정규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 원 이하,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위 사례의 경우 장부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증명서류가 없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다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꼭 지출에 관련된 증명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하자.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70조, 제81조의 6, 제160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08조의 2

## 5 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명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자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해 계산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기준경비를 적용 대상자인 경우에는 증명서류가 있다면 주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추계 계산하는 경우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장하는 사업자는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된 모든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되지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 사업자는 기본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인 주요경비만 인정받게 된다.

-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② 한도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

\*\* 2023 귀속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귀속연도	2024년 귀속
업종구분	기준수입금액	2023년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000만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600만 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2,400만 원
--	----------

○ 주요경비의 범위

- 1) 매입비용 : 상품·제품·재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한다. 따라서 음식 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의 금액은 제외된다.
- 2)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임차료를 말한다.
- 3)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한다.

○ 갖추어야 할 증명서류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명서류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면 소득금액 계산시 주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 208조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국세청 고시 제 2021-5호[매입비용, 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의 종류 고시]

## 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유리하다

● 개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보다는 소득세 부담이 훨씬 높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은 월세의 합계액에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하여 계산하는데, 월세는 기장에 의해 계산 하든 추계로 계산하든 수입금액 차이가 없으나, 간주임대료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와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 사례

임대업 씨의 임대현황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소득세 차이를 비교해보자

- 임대기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 월세수입 5,000,000원
- 임대보증금 5억 원
- 건물기준시가 5천만 원
-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 이자 18,500,000원
- 인건비 등 필요경비 합계액 30,000,000원(주요경비 1,500만 원)
- 가족상황 처와 미성년자 자녀 2명
- 기준경비율 19.9%(2023년 귀속)
- 정기예금 이자율
- 월 관리비수입 1,000,000원
- 상가취득가액(건물분) 2억 원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2%

귀속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자율	1.8 %	2.1 %	1.8 %	1.2 %	1.2 %	2.9%	3.5%

①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수입금액 = 임대료 + 관리비 + 간주임대료

- 임대료수입 = 5,000,000원 × 12월 = 60,000,000원
- 관리비수입 = 1,000,000원 × 12월 = 12,000,000원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건물취득가액)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이자  
= (5억 원 - 2억 원) × 3.5% - 18,500,000원 = 0

∴ 총수입금액 = 60,000,000원 + 12,000,000원 + 0원 = 72,000,000원

▷ 소득금액 = 72,000,000원 - 30,000,000원 (필요경비 합계액)  
= 42,000,000원

▷ 과세표준 = 42,000,000원 - \* 6,000,000원 (소득공제) = 36,000,000원

▷ 소득세액 = 36,000,000원 × 15% - 1,260,000원 (누진공제) = 4,140,000원  
\* 소득공제는 가정치임

②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기준경비율 적용)

▷ 수입금액 = 임대료 + 관리비 + 간주임대료

- 임대료수입 = 5,000,000원 × 12월 = 60,000,000원
  - 관리비수입 = 1,000,000원 × 12월 = 12,000,000원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5억 원 × 3.5% = 17,500,000원
- ∴ 총수입금액 = 60,000,000원 + 12,000,000원 + 17,500,000원 = 89,500,000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89,500,000원 - 15,000,000원 - (89,500,000원 × 19.9%) = 56,689,500원

▷ 과세표준 = 56,689,500원 - 6,000,000원 (소득공제) = 50,689,500원

▷ 소득세액 = (50,689,500원 × 24% - 5,760,000원) × (1.2%) = 7,686,576원 (무기장가산

세 20% 적용)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훨씬 세금이 절약된다.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25조, 제81조의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4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 7 사업 초기 손실이 발생된 경우 기장을 하면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다.

###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다음 15년간(2019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10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주거용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 ○ 결손금공제

#### ① 결손금공제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에 대해 1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결손금 발생 ⇨ 결손금 통산 ⇨ 결손금 이월

#### ② 결손금공제순서

발생된 결손금은 아래의 순서대로 공제한다.

구분	공제순서
부동산임대업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 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주거용 건물임대업 제외)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

### ○ 이월결손금공제

#### ① 이월결손금공제란

이월결손금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년\*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 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 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 2009년~2019년 발생분은 10년

② 이월결손금공제순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아래의 순서대로 공제한다.

구분	공제순서
부동산임대업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 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주거용 건물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공제

③ 이월결손금 배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 결손금의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 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되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위 사례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내용을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해 가장한 사업자만 가능하다.

관련 법규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 8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을 확인해보자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유 주택수는 부부 합산 하여 계산)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과세대상(X)
1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주택 월세 수입</li> <li>• 국내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월세 수입</li> <li>• 모든 보증금·전세금</li> </ul>
2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월세 수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보증금·전세금</li> </ul>
3주택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월세 수입</li> <li>•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amp;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li> <li>•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인 경우</li> </ul>

\* (소형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40m<sup>2</sup>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

●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①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과세해야 한다.

②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 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임대 등 특정 요건에 맞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2조  
제25조  
제64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9

##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 ① 아래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단, 가상자산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분리과세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 가상자산소득(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및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② 원천징수세율
    - 일반적인 경우 : 20%
    -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 3억 초과분 : 30%
-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
 

아래의 기타소득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
  - ①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과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한다.
  - ② 원천징수세율
    - 일반적인 경우 : 20%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일시금(2018년 1월 1일 이후 해지) : 15%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 선택 조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조건은 세율이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율은 20%이고 종



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있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적용받는 세율이 6%, 15%인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즉, 종합소득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 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 2022년 귀속 이전은 4,600만원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4조, 제129조

## 10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하여 공제 받도록 하자

####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60%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 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 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 ①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백만 원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③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④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 ⑤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②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
- ④ 점당 6천만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제외)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1억 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90%)
- ⑤ 2천만 원 이하의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유형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범위가 다르므로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 받도록 하자.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3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1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을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소득세 중간예납은 금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으로 직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고지분을 납부하는 경우와 중간예납 추계 신고분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 고지·납부

소득세 중간예납은 아래 산출식에 따라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text{중간예납세액} = \text{중간예납기준액} * \frac{1}{2} - (\text{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 환급세액

○ 추계액 신고·납부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세액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중간예납기간 중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65조



## 12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 ● 소득세 분할 납부

#### ○ 분할납부 대상금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분할 납부 대상이 아님

#### ○ 분할납부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납할 세액」란에 분납금액을 표기하면 되며, 별도의 절차나 신청서는 필요없다.

#### ○ 분할납부금액 계산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기한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금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이하 금액	

예시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에는 2025년 5월 31일까지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5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할 세액이 3,000만 원인 경우에는 2025년 5월 31일까지 1,5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5년 7월 31일까지 납부 하면 된다.

소득세 납부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활용하여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하자.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7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 IV.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 1 전자세금계산서 쉽게 발급하고, 신고는 편리하게 하자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 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이다. 세금계산서 종류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지만, 쉽고 편리한 전자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발급하면 세금 절약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먼저 전자서명을 위한 공동인증서를 준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ASP)가 운영하는 발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만약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렵다면 세무서 방문을 통해 보안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별도로 출력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 세금계산서에 비해 발급 비용이 절감되고, 분실 및 훼손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신고가 간편 하다.

또한 직전연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발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의 발급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2023년 7월 발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의 발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2023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되었다면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한다.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가산세율
미발급가산세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지연발급가산세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한 경우	1%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미전송가산세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	0.5%
지연전송가산세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0.3%



## V. 원천 관련

### 1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기타소득은 일반국민들에게는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으나,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때에는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 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김갑수 씨의 경우는 소득세 1,000만 원(위약금은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5,000만 원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과 개인지방소득세 100만 원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위약금, 배당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만 지급금액의 80%가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

#### ●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 ①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②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③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 ④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 소싸움경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⑤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⑥ 영화필름·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에 대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⑦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 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토사석채취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⑧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연 5백만 원 이하 물품·장소 대여 대가 포함)
- ⑨ 공익사업법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⑩ 계약의 위반·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제외)
- ⑪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 ⑫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 ⑭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⑮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 ⑯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⑰ 사례금
  - 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 ⑲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⑮~⑰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⑳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㉑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
  - ㉒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㉓ 종업원 등,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5백만원(2024년부터 7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㉔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 ㉕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은 제외)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 보아야 한다.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21조, 제127조의 제1항 제6호

## 2 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사업자가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강연료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인적용역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이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사료를 받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최근 텔런트나 영화배우가 CF에 출연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텔런트 등의 CF출연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이유는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범위가 서로 달라 세부담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 인적용역사업소득의 범위

인적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 ①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②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③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 ④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⑤ 직업운동가·기수·운동지도자(심판을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⑥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등을 권유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 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⑦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⑧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⑩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⑪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⑫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⑬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법률구조 (사업)
- ⑭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 ⑮ 직업소개 및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창업상담용역
- ⑯ 장애인보조조건 훈련 용역
- ⑰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

급하는 용역 포함)

- ⑱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 ⑲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 서비스 이  
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 ⑳ 노동조합을 통한 근로자공급 용역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다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파견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용역 제외)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 제42조

### 3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및 립살롱·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이용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접대  
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구분 기재 하여 봉사료를 자기의 수  
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또는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더라도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 ● 원천징수 세율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등의 부담  
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술값 등을 봉사료와 나누어 영수증  
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봉사료로 처리한 금액을 수입금액(공급 대  
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 ● 장부비치 및 기장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  
성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 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봉사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지급대장을 비치 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놓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 하도록 하여야 한다.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세금이 부과될까봐 서명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순히 영수증만 술값 등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봉사료 지급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해 놓는 것이 좋다.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동 화 명	7월 11일 (금)	7월 14일 (월)	7월 15일 (화)	7월 16일 (수)	7월 17일 (목)
미 달 러 (USD)	1373.00	1374.70	1378.50	1382.70	1387.10
일 본 엔 (JPY)	939.32	932.16	932.52	928.77	937.90
영 국 파 운 드 (GBP)	1865.15	1853.78	1850.71	1850.88	1860.66
캐 나 다 달 러 (CAD)	1005.53	1003.72	1005.87	1007.84	1013.44
홍 콩 달 러 (HKD)	174.91	175.12	175.61	176.15	176.71
위 안 화 (CNH)	191.27	191.92	192.20	192.68	193.15
유 로 화 (EUR)	1607.10	1604.07	1608.02	1604.49	1614.17
호 주 달 러 (AUD)	905.29	902.90	902.02	900.83	904.94
싱 가 폴 달 러 (SGD)	1073.37	1072.94	1074.81	1075.86	1081.31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23.25	323.27	324.16	325.95	326.76